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호외(號外) 1933(昭和 8)년 10월 1일 일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70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8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·사설철도·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朝鮮總督府鐵道·私設鐵道·軌道並航路間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10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명(題名)을 「조선 내 철도·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(朝鮮內鐵道·軌道及航路間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1조(條) 조선총독부철도(朝鮮總督府鐵道)와 조선(朝鮮) 내(內) 철도(鐵道)·궤도(軌道) 또는 항로(航路)와 여객(旅客)·수하물(手荷物)·소하물(小荷物) 및 부수(附隨) 소하(小荷物)의 연대운송(連帶運送)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(本) 규칙(規則)에 의함. 전항(前項)에 의한 연대운송(連帶運送)의 범위(範圍)는 별도(別途)로 이것을 정(定)함.

제2조(條) 중(中) 제6호(號)를 제7호(號)로 개정(改正)하고 아래[左]의 1호(號)를 추가(追加)함.

6 북선(北鮮)이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선철도관리국(南滿洲鐵道株式會社北鮮鐵道管理局)을 말함.

제7조(條) 승차권(乘車券)은 편도승차권(片道乘車券), 왕복승차권(往復乘車券), 학생정기승차권(學生定期乘車券), 단체승차권(團體乘車券) 및 대절승차권(貸切乘車券)의 5종(種)으로 함. 단(但) 학생정기승차권(學生定期乘車券)은 국선(局線)과 북선선(北鮮線) 간(間), 대절승차권(貸切乘車券)은 차량(車輛)이 직통(直通)을 함을 득(得)하는 구간(區間)에 대해서만 이것 발매(發賣)를 하고, 왕복승차권(往復乘車券) 및 단체승차권(團體乘車券)은 연대운송(連帶運送)의 범위(範圍)에 특(特)히 정(定)함이 있는 것은 이것 발매(發賣)를 하지 아니함.

제10조(條)에 아래[左]의 단서(但書)를 추가(追加)함.

단(但) 학생정기승차권운임(學生定期乘車券運賃)은 각선(各線)의 킬로미터[糶程]를 통산(通算)해서 국(局)이 정한 바[所定]에 의(依)해 계산(計算)함.

제13조(條) 중(中) 「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2조(條)제8호(號)에 의한 학교(學校)의 교원(教員) 기타(其他)에 대(對)한」을 「학교(學校) 교원(教員) 기타(其他)에 대(對)한 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56조(條)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20조(條) 중(中) 「제23조(條)에서 제25조(條)까지, 제30조(條)」를 「제22조(條)에서 제25조(條)까지, 제27조(條), 제30조(條)에서 제32조(條)까지, 제49조(條), 제51조(條)에서 제53조(條)까지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25조(條) 신문지(新聞紙), 잡지(雜誌)의 운임(運賃)은 아래[左]와 같이 함. 단(但) 국선(局線)과 북선선(北鮮線) 간(間)은 1선(線)으로 간주(看做)하고, 국선(局線)과 북선선(北鮮線) 간(間)만 연대(連帶)할 경우는 국(局)이 정한 바[所定]에 의(依)함.

2선 연대(連帶)의 경우 1킬로그램[kg·斤] 당(當) 1전(錢) 6리(厘) 최저운임(最低運賃) 3전(錢)

3선 연대(連帶)의 경우 1킬로그램[kg·斤] 당(當) 2전(錢) 5리(厘) 최저운임(最低運賃) 4전(錢)

제29조(條)의2 중(中) 「국선(局線)과」를 「국선(局線)과 북선선(北鮮線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30조(條)의2 중(中) 「국선(局線)」을 「국선(局線) 및 북선선(北鮮線)」으로 개정(改正)함.